

[25년 제34회 공인노무사 대비 전범위 모의고사 노동법1,2 정오표]

1. 노1 제3문 해설 정답 오기 수정

㉟ → ㉨

2. 노1 제5문 해설 및 정답 오기 수정

㉨ → ㉨

<해설> ㉨ 근기법 제6조 ㉨ 영리로 타인의 취업에 개입하는 행위에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을 알선해 주기로 하면서 그 대가로 금품을 수령하는 정도의 행위도 포함된다고 볼 것이고, 반드시 근로관계 성립 또는 갱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정도로 구체적인 소개 또는 알선행위까지 나아가야만 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(대법원 2008.9.25. 선고 2006도7660 판결). ㉨ 근기법 제7조 ㉨ 근기법 제5조 ㉨ 근기법 제10조

3. 노1 제12문 문제 보기 예문 ㉨번 전단 삭제 및 해설 오기 수정

㉨ 고용노동부장관은 체불사업주가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 1년 이내 임금 등의 체불총액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인적 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. 고용노동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1년간 근로자에게 임금등(근퇴법에 따른 퇴직급여등은 포함)을 3개월분 임금 이상 체불한 사업주를 상습체불사업주로 정할 수 있다.

<해설> ㉨ 고용노동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1년간 근로자에게 임금등(근퇴법에 따른 퇴직급여등은 제외)을 3개월분 임금 이상 체불한 사업주를 상습체불사업주로 정할 수 있다(근기법 제43조의4 제1항). ㉨ 고용노동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1년간 근로자에게 5회 이상 임금등을 체불하고, 체불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사업주를 상습체불사업주로 정할 수 있다(근기법 제43조의4 제1항). ㉨ 고용노동부장관은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(근기법 제43조의7 제1항). ㉨ 근로자는 사업주가 1년 동안 임금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한 개월 수가 총 3개월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에 사업주가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등의 3배 이내의 금액을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(근기법 제43조의8 제1항). ㉨ 근기법 제43조의8 제2항

4. 노2 제30문(전체 79) 해설 정답 오기 수정

㉟ → ㉨